



스스로 점검하는

노인인권실천 가이드북

- 시설급여 평가지표 중심으로 -

h·well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

안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인인권을 실천하는
질 높은 요양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스스로 점검하는 노인인권보호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책자의 내용이 노인인권 실천에 앞장서는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책자의 내용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평가매뉴얼의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기본사항은 “2021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고시, 매뉴얼 등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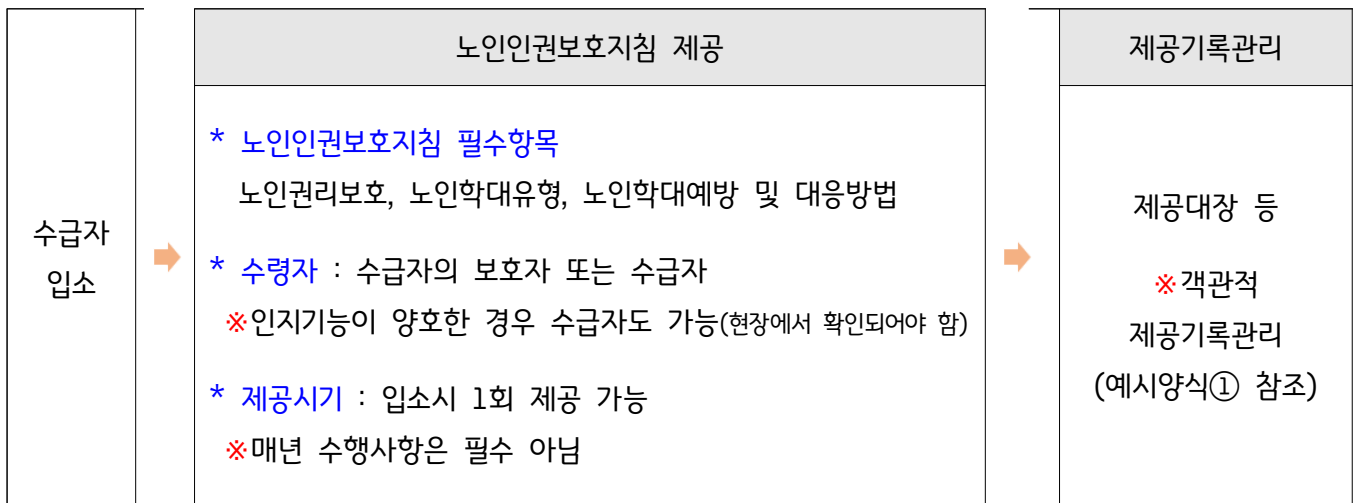
1.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	1
2.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 게시 및 수록	2
3.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3
4.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7
5. 입소중 부득이한 신체제재 발생했을 경우 통지하고 기록	8
6.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대표 참여시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 청취하고 조치	12
7. 인권보호 실천 자가점검표(중사자용)	14
8. 노인요양시설 노인인권보호 실천 점검표(기관용)	15

1	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한다.	평가지표 29(28) ①
---	--------------------------------------	---------------------

✓ 주요점검항목

- | | | |
|--------------------------------|----------------------------|------------------------------|
| ■ 모든 어르신(보호자)에게 노인인권 지침을 제공했다. | ☐ 예 | ☐ 아니오 |
| ■ 제공여부를 기록관리 하였다. | ☐ 예 | ☐ 아니오 |

✓ 노인인권지침 제공과정



(예시양식①) 노인인권지침 제공기록

2023년 ○○ 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대장

제공일자	수급자명	제공내용	제공자	관계	수령자	제공방법
4월 / 일	김건이	■ 노인인권보호지침 전체 제공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사회복지사 박철수	자녀	김영희	입소시 인편전달

2	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다.	평가지표 29(28) ①
---	-------------------------------------	---------------------

✓ 주요점검항목

- 시설 내 게시 (게시장소:)
 - ☐ 노인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 노인학대유형 ☐ 기타 ()
- 노인학대 예방정보 수록
 - ☐ 정기간행물 ☐ 홈페이지 ☐ 홍보자료 ☐ 기타 ()

☺ 노인인권보호지침 제작시 참고하세요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 _ 2. 노인요양_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_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지사소식>게시번호 60774.
표준화된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서’

☺ 노인 인권 및 학대에 관한 홍보물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noinboho1389.or.kr (홈페이지>자료실, 포스터 다운로드)
- 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물 우편 신청 일부 가능
(지역별 상이,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고)

3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평가지표 29(28) ②
---	---	---------------------

✓ 주요점검항목

- 모든 직원이 ()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 ☐ 예 ☐ 아니오
- 신규 입사한 직원은 14일 이내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 직원 교육 실시 후 관련 기록이 작성되어 있다.
 (자 체 교 육) ☐ 교육일지 ☐ 강사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서명)
 (인터넷교육) ☐ 교육자 전체 수료증 (노인인권+학대예방)

✓ 직원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진행과정

구분	직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제공기록관리
신규 직원	* (평가지표 7-② 연계) 입사 후 14일 이내 교육 실시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내용 - 교육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노인인권보호지침 포함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예방 및 대응방법).	교육일지 등 ※기록관리 (예시양식② 참조)
기존 직원	* 기관 별도 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등 ※ 퇴사일이 속한 분기는 교육 미실시 인정	(자체교육) 교육일지 등 (온라인) 수료증

(예시양식②) 직원교육일지

2023년 ○○ 요양원 교육일지

교육명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교육일시	2023. 2. 8 14:시~14시50분
강사	시설장 홍길동	교육방법	PPT자료 활용한 집합교육
교육내용	** 기관에서 실제로 교육 진행하고, 실시한 내용 기록 ** 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 소개 2. 노인학대예방 교육 -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참석자	김건이	(서명)	박요양 (서명)
	김강아	(서명)	윤노인 (서명)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활용 자료

- 노인학대예방교육 홈페이지 _ www.15771389.or.kr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지사소식>게시번호 60922, 60929, 60937
'노인학대 예방교육 (총 3부작)'

☺ 노인인권교육과 학대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 경우 추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 (평가기준)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교육방법은 확인하지 않음.
(자체교육인 경우 확인사항 기록된 내용, 사이버교육은 수료증)
 - 교육내용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평가 및 법적기준에 따른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이수방법

구분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	법정의무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인권교육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
교육 대상자	노인요양시설 모든 직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시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회차당 시간 제한 없음)	연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교육 내용	[2021 시설급여평가매뉴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분기별 1회 교육에서 노인인권과 학대예방교육 모두 확인되어야 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①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②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③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④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항
교육 기관	지정된 교육기관 없음	지정된 교육기관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 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방법	자체교육 외부강사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기관재량	① 기관 직장교육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사이트에 등재된 교 육자료 활용 ② 사이버교육 등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① 집합 교육 ② 방문 교육 ③ 인터넷 교육 이수

☺ 자체교육과 법적 기준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에 따른 평가 인정 예시 사례

(사례)

[최보호 요양보호사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이수내역]

- 2023. 8. 30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기관 자체교육 이수 (교육일지)
- 2023. 9. 10 노인학대예방교육 인터넷 교육 1시간 과정 이수 (수료증)
- 2023. 11. 10 노인인권교육 인터넷 교육 6시간 과정 이수 (수료증)

	23년 3분기 (7.1~9.30)		23년 4분기 (10.1~12.31)	
	교육일자	평가인정	교육일자	평가인정
노인인권	(23.8.30) _ 자체 교육	○	(23.11.10) _ 인터넷	X
학대예방	(23.8.30) _ 자체 교육 (23.9.10) _ 인터넷		미 실시	

(참고)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방법 안내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인권교육	
자체 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홈페이지 (www.15771389.or.kr)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불가	
인터넷 교육	「과정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경기도지식 (www.gseek.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 (www.dile.or.kr) *세종e배움터 (edu.sjhle.or.kr)	별도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진행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in.kohi.or.kr)	
방문 교육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청 → 강사파견 (최소인원있음 /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가능)	요청기관 담당자가 수요 파악 후 별도 유선 협의진행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사전협의후 진행)	
집합 교육	-	노인보호 전문기관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신청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www.noinedu.or.kr) - 시설소재 지역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한해 신청가능
		한국보건 복지인재원	*개인이 개별신청 (www.kohi.or.kr)

4	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 29(28) ②
---	--	---------------------

✓ 주요점검항목

- 모든 수급자 ()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 ☐ 예 ☐ 아니오
- 수급자 교육 실시 후 관련 기록이 작성되어 있다.
☐ 교육일지 ☐ 강사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

✓ 수급자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진행과정

구분	수급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제공기록관리
신규 수급자	* (평가지표 29(28)-① 연계)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 - 입소시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 = 해당분기 교육이수	교육일지 등 ※기록관리 (예시양식 ③ 참조)
기존 수급자	* 기관 별도 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수급자 인지기능에 맞게 자체적 운영 ※ 퇴소일이 속한 분기는 교육 미실시 인정	

(예시양식 ③) 수급자 교육일지

2023년 ○○ 요양원 교육일지

교육명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교육일시	2023. 2. 10. 10:00~10:30
강 사	시설장 김꽃님	교육방법	동영상 자료 활용한 자체교육
참석자			
교육 내용	** 기관에서 실제로 교육 진행하고, 실시한 내용 기록 ** 실제 어르신에게 교육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참자 (사유)			

5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평가지표 29(28) ④
---	--	---------------------

✓ 주요점검항목

- 비대체성 (침대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등)제재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 부득이하게 신체제재가 필요한 수급자가 발생되었을 때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 예 ☐ 아니오

- 부득이한 신체제재가 발생한 경우, 통지한 기록을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있다.
☐ 수급자명 ☐ 수급자상태(제재사유) ☐ 제재일시 ☐ 제재자 ☐ 제재방법
☐ 통지대상자 ☐ 통지일시 ☐ 통지방법

☺ (관련근거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 (관련근거2)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⑥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사용 등 신체제한 금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 *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일시성)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동의를 구한 후, 관련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야 함.

☆ 기능상태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급자 동의서 받거나 기록 작성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 제재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지해야 함.
- ② 제재가 종료된 후에 다시 제재를 해야 할 경우 다시 통지해야 함.
(최초로 통지한 뒤 동일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재를 하는 경우는 통지한 것으로 인정)

☺ 통지 간격에 대한 평가기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 참조)

Q) 억제대를 최초로 시행했을 때 보호자에게 통지했고, 현재도 동일한 억제대를 하는 상황이면 매 해마다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통지 간격에 대한 평가기준은 없으나 원활한 기관운동을 위해 기관의 운영방침에 맞추어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동일한 억제대 사용이 동일한 사유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억제대라고 하더라도 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존 사유가 중단 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적용할 때는 가족 등에게 통지가 필요합니다.

☺ 낙상예방을 위해 침대난간올리기, 휠체어에서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도 신체제한인가요?

침상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의 항목은 낙상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재로 입소 시 침대 및 휠체어 이용 예정임에 따라 제재시작으로 보고 제재기록 및 통지를 수행할 경우 인정

-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고려 되어야 함
- 타 억제대는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 제재 및 통지를 했는지 확인

**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Q&A 사례집 Q88번 참조

☺ 부득이한 신체제재 발생시 기록사례① - 침대난간

2023년 10월 1일 14:00, 김영희 어르신은 ○○요양원 입소하였다.
입소당시 경미한 치매증상으로 지남력이 저하되어 있으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다.
원활한 거동을 위해 입소하여 침대를 사용할 계획이다.

(예시양식 ④) 신체제재 통지기록

부득이한 신체제재 발생에 따른 보호자 통지 사항					
수급자명		김영희		생년월일	1940. 9. 1
				입소일자	2022. 10. 1
제 재	수급자상태 (제재사유)	□ 경미한 치매증상으로 지남력 저하 있으나 보장구 없이 스스로 거동할 수 있음. □ 침대사용 예정으로 낙상예방을 위해 침대난간 유지 필요함.			
	제재일시	2022년 10월 1일 14시~			
	제재자	김정희			
	제재방법	침대난간 상시유지			
통 지	통지일시	2022년 10월 1일 13시50분			
	통지대상자	관계	자녀(딸)	이름	윤건강
	통지방법	☒ 면담 ☐ 유선 ☐ 기타 ()			

☺ 부득이한 신체제재 발생 시 기록사례② - 우주복 착용

(상황)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정희 어르신 치매증상은 심해졌다.

기저귀에 손을 넣어 변을 만지고, 입에 넣는 행동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노력)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관찰을 강화하고 자주 산책하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문제행동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발생 빈도는 더 높아졌다.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결정) 결국 감염예방 등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해 우주복 착용을 결정하였고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상황을 안내하고 동의를 구했다. 보호자도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여 2023년 8월 20일에 우주복 착용을 시작하였다.

(예시양식 ④) 신체제재 통지기록

부득이한 신체제재 발생에 따른 보호자 통지 사항						
수급자명		김영희	생년월일	1940 . 9. 1	입소일자	2022. 10. 1
제재	수급자상태 (제재사유)	□ 수시로 기저귀 안에 손을 넣어 변을 만지며, 입에 넣는 행동을 반복함. □ 종사자들이 수시 관찰하며 행동을 예방하고, 수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도 문제행동 계속됨. □ 수급자가 불결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상황 및 그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주복 착용 등의 조치가 필요함.				
	제재일시	2023년 8월 20일 18시 40분~				
	제재자	간호사 윤정영				
	제재방법	치매 우주복 착용				
통지	통지일시	2023년 8월 20일 18시 30분				
	통지 대상자	관계	자녀(딸)		이름	윤건강
	통지방법	☐ 면담 ☒ 유선 ☐ 기타 ()				

✓ 주요점검항목

- ✓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견청취와 조치 과정

- 12 -

(예시양식 ⑤) 운영위원회 회의록

○○년 ○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3년 10월 5일 (목) 15:00~16:00		회의장소 회의실
참석자	내부인사	최우리(시설의장), 윤나라(종사자대표)	
	외부인사	박대한(거주자 보호자대표), 이민국(사회복지공무원), 나건강(전문가)	
회의 내용	※ 회의록 작성 시 유의사항		
	▪ 외부인사를 포함한 참석자 발언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예시)		
	°시설장(최우리) : “○○○ 보호자님 기관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할 만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거주자 보호자 대표(박대한) : 코로나로 면회가 자유롭지 못한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어머니와 연락을 자주 하고 싶지만 매번 선생님들 통해서 연락을 하려고 하니 죄송스러워 연락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호자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드시겠지만 <u>정기적으로 통화(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u> 해 주시면 더 편안히 어머니와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고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이민국) : 좋은 의견입니다. 코로나로 자칫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기관에서 힘드시더라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고			

○○년 ○분기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단			
회의일자	2023년 10월 5일 (목)	회의장소	회의실
참석자명			
구분	소속	성명	서명
시설의장	○○요양원		
종사자대표	○○요양원		
거주자 보호자 대표	입소자 윤○○ 보호자		
사회복지공무원	○○시청 노인복지과		
전문가	○○대학교 전임강사		

인권보호 실천 자가점검표 (종사자용)

- ☺ 인권보호 실천 자가 점검표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 스스로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자가 점검표입니다.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 작성자 :

항 목	예	아니오
1. 나는 분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2. 나는 어르신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는 노인으로 존중하며 급여를 제공한다.		
3. 나는 어르신에게 경어 사용을 일상화 하고 있다.		
4. 나는 어르신을 밀치거나 신경질적으로 수발하지 않는다.		
5. 나는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필수 돌봄 행위(식사,투약,체위변경,배변 등)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6. 나는 어르신(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하지 않았다.		
7. 나는 기저귀교체나 의복 교환시 어르신의 수치심 유발하지 않도록 가림막 등을 활용하고 있다.		
8. 나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9. 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한 사항은 사소한 일이라도 보고하고 인계인수하고 있다.		
10. 나는 어르신 돌봄 과정에서 얻은 비밀(질병, 가족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는다.		
11. 나는 어르신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 응대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 나는 불평을 제기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3. 나는 어르신의 기호와 기능에 알맞은 음식을 제공하였다.		
14. 나는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한다.		
15. 나는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16. 나는 어르신이 기관 내에서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인권보호지표 실천 점검표 (기관용)

□ 작성일 :

□ 작성자 :

1. 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 | | |
|------------------------------------|-----|-------|
| ■ 신규 입소한 어르신(보호자)에게 노인인권 지침을 제공했다. | □ 예 | □ 아니오 |
| ■ 제공여부를 기록관리 하였다. | □ 예 | □ 아니오 |

2 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 하고 있다.

- | | |
|---|-------------------|
| ■ 시설 내 게시 (게시장소:) | |
| □ 노인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 □ 노인학대유형 □ 기타 () |
| ■ 노인학대 예방정보 수록 □ 정기간행물 □ 홈페이지 □ 홍보자료 □ 기타 () | |

3. 우리 기관은 모든 직원에게 분기별 1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분기별 1회 직원교육 일정이 수립되어 있다. | □ 예 | □ 아니오 |
| ■ 모든 직원이 ()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 | □ 예 | □ 아니오 |
| ■ 신규 입사한 직원은 14일이내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예 | □ 아니오 |
| ■ 직원 교육 실시 후 관련 기록이 작성되어 있다. | | |
| (자체교육) □ 교육일시 □ 강사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서명) | | |
| (인터넷교육) □ 교육자 전체 수료증 (노인인권+학대예방) | | |

4. 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분기별 1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
|---|-----|-------|
| ■ 분기별 1회 수급자 교육 일정이 수립되어 있다. | □ 예 | □ 아니오 |
| ■ 모든 수급자에게 ()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 □ 예 | □ 아니오 |
| ■ 수급자 교육 실시 후 관련 기록이 작성되어 있다. | | |
| □ 교육일시 □ 강사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참석자 | | |

5. 우리 기관은 「수급자 입소시에 수급자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 | | |
|--|-----------|
| ■ 비대체성 (침대난간, 휠체어안전벨트 등)제재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 |
| □ 예 □ 아니오 | |
| ■ ()월 현재, 절박성, 일시성으로 신체제재하는 수급자가 있다. | □ 예 □ 아니오 |
| ■ 부득이한 신체제재가 필요한 수급자가 발생되었을 때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 □ 예 □ 아니오 |
| ■ 부득이한 신체제재가 발생한 경우, 통지한 기록을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있다. | |
| □ 수급자명 □ 수급자상태(제재사유) □ 제재일시 □ 제재자 □ 제재방법 | |
| □ 통지대상자 □ 통지일시 □ 통지방법 | |

6. 우리 기관은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수급자(보호자)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조치한다.

- | | | |
|--|-----|-------|
| ■ 위촉된 수급자(보호자)대표의 위촉기간이 유효하다 | □ 예 | □ 아니오 |
| ■ 수급자(보호자)대표에게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반기별 1회(월)청취하였고, 회의록이 있다. | □ 예 | □ 아니오 |
| ■ 수급자(보호자)대표에게 의견 청취하고 조치하였다. | □ 예 | □ 아니오 |
| □ ()월 회의 요구·불만사항() - 반영() | | |
| □ 요구사항 확인되지 않음. | | |

평가관련 자료 게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장기요양 기관평가/공지사항

게시번호	제 목
60591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 알림·자료실/장기요양 기관평가/평가매뉴얼 및 Q&A

게시번호	제 목
공지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8차)
공지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
4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직무 관련 자료실

게시번호	제 목
60033	2021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

